

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제명 띄어쓰기 및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 인용조문 수정
 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”를 “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청소년기본법 제22조”를 “「청소년 기본법」 제2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”를 “「청소년 기본법」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2. 미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 성 자	주민생활지원과장 남 동 선
연 락 처	(033)330-2150

관계 법령

□ 청소년기본법

제21조(청소년지도사)

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.

② ~ ⑤ 생략

제27조(청소년지도위원)

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·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